화협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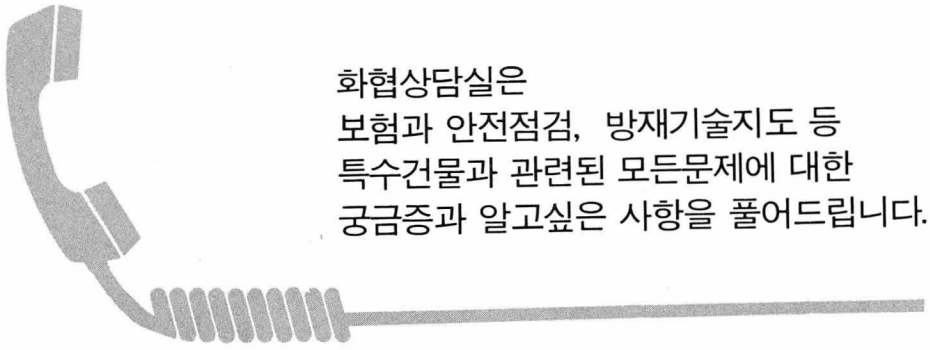

화협상담실은
보험과 안전점검, 방재기술지도 등
특수건물과 관련된 모든문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싶은 사항을 풀어드립니다.

보험상담

문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업종과 건물에 포함된 부대설비 및 동산에 대하여서도 귀협회에서 보험을 인수하는지요 ?

답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4층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학교, 사설강습소, 병원, 호텔, 공연장, 영화TV촬영소 및 방송시설장, 옥내판매장, 시장, 유흥음식점, 공동주택, 공장등입니다.

그리고 특수건물내의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특수건물로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 되며 동산의 경우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당협회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주) 삼양사. 응담자 : 보험1부〉

문 : 건물의 감정가액은 2억원이나 은행채권액은 1억원인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질권설정 해당금액인 채권액 1억원만 부보할것을 요청하는바, 이렇게 했을때 채권보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

답 : 보험금의 지급방법은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

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특수건물시가기준액표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은 정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감정회사에서, 1년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보험금액으로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 기업은행 화양동지점, 응답자 : 보험1부〉

문 : 화재보험 요율인하에 따른 기존계약분의 미경과기간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 혜택이 없을경우 갱개해지를 하면 보험료의 절감혜택은 ?

답 : 화재보험요율서 통칙 제2의 요율의 제정, 변경및 폐지조항에 따라 요율의 변경이전을 책임개시로 하는 현재 유효기간중인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추징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으며 갱개해지의 경우 보험료의 환급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요율개정으로 인하여 신·구계약의요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의 환급보험료는 낮은 쪽의 요율로 계산토록 되어있어 다같이 혜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자 : 정석기업, 응답자 : 보험1부〉

문 : 화재보험보통약관 4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호단서의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손해"는 무엇을 뜻하는지요 ?

답 : 두종류의 보험목적물 "갑"과 "을"중 "갑"의 자연발화 또는 자연발열로 인하여 "을"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다.

문 : 화재보험증권 배서사항 및 특별약관에 「전기위험부담보」 추가약관의 보상과 보상되지 않는 범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 전기위험 부담보 추가약관은 발전기등 전기기구장치에 전기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생긴 당해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전기적 손해는 물론 화재손해까지 면책이지만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기적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이상 질의자 : (주) 금복주 제2공장, 응답자 : 기획조정실〉

문 :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보험금액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요청하는바 이에 따른 처리방법은 ?

답 : 보험금은 항상 소유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목적물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나 근저당권설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배서에 따라 보험금액을 한도로 채권자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질의자 : 시장 소유주, 응답자 : 보험1부〉

방재상담

문 : 방재센타에 적응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설비 설치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답 : 방재센타에 대한 소화설비 및 설치 의무 규정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방재센타는 건물의 관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 이므로 초기 소화기 및 할론1301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자 : 서대문농협빌딩, 응답자 : 점검1부〉

문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비상전원 설치대상과 비상전원의 종류를 설명하여 주십시요.

답 : 비상전원은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전원의 종류에는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및 축전지설비가 있읍니다. 비상전원은 옥내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의 것이어야 하고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는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질의자 : 조상화, 응답자 : 점검1부〉

문 비상콘센트 설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답 : 비상콘센트 설비는 제1종장소, 제2종장소, 제3종장소의 경우에는 11층이상의 소방대상물 지하가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0M²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읍니다.

가. 전원회로 공급용량은 3상교류 200볼트로서 30암페어의 것과 단상교류 100볼트로서 15암페어 인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2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각층에 있어서 전압별로 설치하는 전원으로 부터의 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라.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비상콘센트는 11층 이상의 각층에 설치하되 당해층의 각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비상콘센트 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전선은 600볼트 2중 비닐절연전선(KSC3328) 또는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으로 하여야 한다.

사. 비상콘센트 보호함을 설치하고 적색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질의자 : 빌라맨션관리과, 응답자 : 점검1부〉

문 : 방화댐퍼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답 : 방화댐퍼는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방화구획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방화벽상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화댐퍼는 철제로서 철판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고 닫힌 때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자 : 삼성물산, 응답자 : 점검1부〉

문 : 층별 방화구획에 대한 법규적용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답 : 건물 연면적이 1000M²를 넘고 3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 대상되며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을 층마다 구획할것임. 층마다 구획이란 3층의 경우 2층과 3층사이를 말하며 지하층의 경우 지하1층과 지상1층과의 사이를 말합니다. 〈질의자 : 삼익쇼핑센타, 응답자 : 점검1부〉

문 : 지하층의 내장재 불연화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고층건물의 경우 5층 이상의 바닥면적(거실부분)이 500M²이상이면 지하층을 포함하여 전건물의 내장재를 불연화 하여야 하며 지하층에 있는 관람집회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주차장, 위험물 저장시설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내장재를 불연화 해야함. 지하층에서의 불연화란 실내의 마감부분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 함을 의미 합니다. 〈질의자 : 럭키빌딩관리실, 응답자 : 점검1부〉

잠깐실수 후회말고 순간순간 불조심